

다. 보험료의 납부증명 등(제47조의3 신설)

- 1)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계약의 범위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과 체결하는 계약으로 하되, 관서운영경비 또는 일상경비로 지급받는 계약은 제외하도록 함.
- 2) 계약 대가를 받기 위하여 보험료 납부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를 해당 계약 대가를 체납한 보험료로 납부하려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납처분으로 그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등 4가지 유형으로 정함.
- 3) 보험료 납부사실의 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증명을 신청하도록 하고, 채권양도 또는 법원의 전부명령(轉付命命) 등으로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대가를 지급받는 자가 그 증명을 요청하도록 함.

라.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 대한 손실 상당액의 징수(제74조의2 신설)

- 1)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에게 징수하는 손실 상당액은 해당 제조업자 등의 위반행위로 보험자,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부당하게 부담하게 된 요양급여비용 전액으로 함.
- 2)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이 동일한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른 손실 상당액 중 가장 큰 금액을 손실 상당액으로 징수하도록 함.
- 3)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약제·치료재료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 상당액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법적근거, 징수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해당 제조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윤 성 규**

●**대통령령 제2743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屬)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제4호 중 “기존화학물질 중 위해성”을 “위해성”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연락처 등”을 “연락처”로 한다.

제24조제2호 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3”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으로 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
2.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조사 및 보급
3.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의 시장성 평가 및 시장 진입 지원
4. 화학물질의 등록·보고 등에 관한 우수 중소기업 업체 선정 및 모범사례 홍보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6.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 지원

제31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 및 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그 취소

18의2. 법 제47조에 따른 청문(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사용 승인 취소에 한정한다)

제31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2. 법 제42조의2제1호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제31조제5항(중전의 제3항)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6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2조의2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42조의2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42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0. 제29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29조의2 및 제3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회에 대한 위탁의 유효기간) 제31조제5항제5호 및 제9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중전의 제31조제3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라 협회에 접수된 등록면제확인 또는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신청의 결과통지에 대해서는 제3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891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 지원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근거 마련(제5조의2 신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위원 개인의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 해임 및 해촉 근거 마련(제5조의3 신설)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화학물질평가위원회 위원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사항 구체화(제29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과 관련한 법령 이행 및 교육·홍보,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조사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위탁 기관 및 위탁 대상 업무 신설(제3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 1)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하도록 함.
- 2) 화학물질 정보의 생산 및 관리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435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및 제3호 중 “고급형”을 각각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호 및 제2호 중 “고급형”을 각각 “대형(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고급형”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